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5.
제안자 : 정 상 혁 의원의외

1. 수정이유

-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명시 하는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부칙에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2007. 6. 30까지로 명시함.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기획관리실 “혁신분권담당관”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